

□ 전형별 가산점 기준 및 제출 필요 서류

구 분	관련법령 및 규정	증빙서류	가점	전형별 가점적용		
				서류	필	면
취업지원 (국가보훈)	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·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	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만점의 5%~10% (증명서상 가점비율)	○	○	○

※ 가산특전 유의사항

1. 가점점수에 대한 증명서를 전형별 입력 및 제출한 경우 각 전형별 상기 기준에 따른 가점 부여
※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(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)
2. 우대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3.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미부여
4. 취업지원대상 가점 적용 기준
 -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
(단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적용)